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09.0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08.1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08.22.
-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1.08.30)
상정, 심사, 보류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11.09.0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 구현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문화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 적 (안 제1조)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 강화 및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을 위함.

2) 책 무 (안 제2조)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함.

3)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안 제3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규정 준용)

4) 독서교육기회 제공 (안 제4조)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5)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안 제5조)

가)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

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6) 독서의 달 운영 등 (안 제6조)

가) 구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수여

7)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안 제7조)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과 협력·지원

8)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안 제8조)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0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성인의 독서율은 65.4%로 2009년 71.7% 대비 6.3% 감소하였고, 연평균 독서량도 10.8권으로 2009년 10.9권 보다 감소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인 독서 장려를 위해서는 ‘도서관 증설 및 장서량 확충’(32.8%), ‘독서진흥 예산확대’(18.7%), 및 ‘대중매체의 책 관련 정보제공 확대(16.5%) 등을 독서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0 안 제2조제3항 중 ‘독서장애인’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에 ‘독서장애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0 안 제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독서장애인’은 법 제2조제3호에 시각장애와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광의적으로 보면 노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복지시설은 일반적인 시설로 소외지역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등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치구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은 안 제2조제3항과 연계되는 조항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정을 요함.

0 안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이 야

기되지 않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5조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 제4장의 ‘독서진흥’과 관련된 규정으로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진흥’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시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로, 같은 조 제3항제6호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은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지원”으로 각각 수정을 요함.

0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직장인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체계상 본 조례에 직장 독서진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09.01.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3조의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하고,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로 함. (안 제2조제3항)
- 나. 제목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를 “연도별 시행 계획을”로 하며, “종합계획”을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하고,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로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로 함. (안 제3조)
- 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을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

까지”로 하며,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단체 등이”를 “단체가”로 함. (안 제5조)

라. “구민”을 “구민의”로 함. (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 중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 로 한다.

안 제3조 제목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를 “연도별 시행 계획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계획” 을 “연도별 시행 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 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을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등이” 를 “단체가” 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구민” 을 “구민의”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p> <p>제2조(책무) ①~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p> <p>① <u>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u></p> <p>② <u>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2.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3. <u>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환경 개선</u></p> <p style="margin-left: 20px;">4.~6. (생략)</p> <p>③ <u>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p> <p>① <u>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p> <p>제2조(책무) ①~② (원안과 같음)</p> <p>③ -----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 -----</p> <p>-----.</p> <p>④ (원안과 같음)</p> <p>제3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p> <p>① -----</p> <p>--- 연도별 시행 계획을-----</p> <p>-----.</p> <p>② 연도별 시행 계획-----</p> <p>-----.</p> <p style="margin-left: 20px;">1.~2. (원안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의-----</p> <p>-----</p> <p style="margin-left: 20px;">4.~6. (원안과 같음)</p> <p>③ -----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p> <p>-----</p> <p>-----</p> <p>-----..</p> <p>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p> <p>① -----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p> <p>-----.</p> <p>② <u>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원 안	수 정 안
<p>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생략) 1.~7. (생략)</p> <p>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u>구민</u>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p> <p>②~③ (생략)</p>	<p>③ ----- ----- ----- 단체가 ----- -----.</p> <p>④ (원안 제3항과 같음) 1.~7. (원안과 같음)</p> <p>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 ---- <u>구민의</u> ----- ----- ----- -----.</p> <p>②~③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11-53
----------	-------

제출년월일 : 201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 구현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문화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 강화 및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을 위함

나. 책무 (안 제2조)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함

다.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안 제3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규정 준용)

라. 독서교육기회 제공 (안 제4조)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마.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안 제5조)

- 1)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
- 2)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단

채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바. 독서의 달 운영 등 (안 제6조)

1) 구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2)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수여

사.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안 제7조)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과 협력·지원

아.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안 제8조)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제정근거

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9조(지역의 독서진흥)

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8.6월, 문화체육관광부)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1. 7. 7 ~ 7. 27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 <원안동의>

- 향후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보조·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표창 대상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8. 11) : 원안의결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7.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5월 25일 (21일)
 김민
 주부모니터단. 비서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